

공중화장실법안(假案)

국회의원 심재철

본 내용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(가칭)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① "공중화장실"이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및 개인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.
- ② "유료화장실"이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법인 및 개인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공공의 장소에 설치한 유료화장실을 말한다
- ③ "개방화장실"이라 함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사적 소유의 화장실을 지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사용을 개방한 것을 말한다.
- ④ "이동화장실"이라 함은 법제7조의 규정에

의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행사 등 일시적으로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 임시화장실을 말한다.

⑤ "기타 화장실"이라 함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화장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공중화장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
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법인 및 개인(이하 "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"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중화장실의 범위)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

- 1.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
- 2.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
- 3. 관광이용객을 위하여 관광지의 관리자가 설치한 화장실
- 4.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
- 5. 도·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·정기시장·대형점·대규모 소매점·도매센타
- 6.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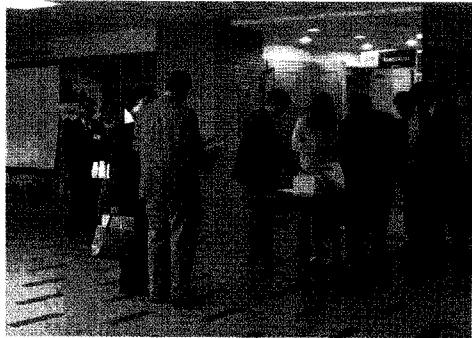
▲공청회에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.
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.

본 공중화장실법안은 법률제정을 위한 가안(假案)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에 관심이 많은 개인 및 단체에서 본 법률에 삽입 및 삭제되어야 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
▶ 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

▶ 전화 : 02)784-4164 ▶ 전송 : 02)788-3201 ▶ e-mail : yang9804@daum.net



▲공중화장실 법률제정 찬성 동의서 제출 모습.

7.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

8.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

9.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

10.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 여객시설

11.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

12.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

13. 석유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

14.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

15.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

② 기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화장실의 설치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화장실의 설치를 명령하여야 한다

② 기타 공중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) ① 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자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, 전체 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남녀 화장실의 변기비율을 최소 1:3의 비율이상이 되게 설치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·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③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

제8조(관리인의 지정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유지·관리) 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별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.

② 기타 유지·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개방화장실)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.



◀ 공청회가 개최되었던 한국관광공사 상영관 입구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이동화장실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어려운 장소에 법 제2조제4항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일시적 행사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적절한 규모의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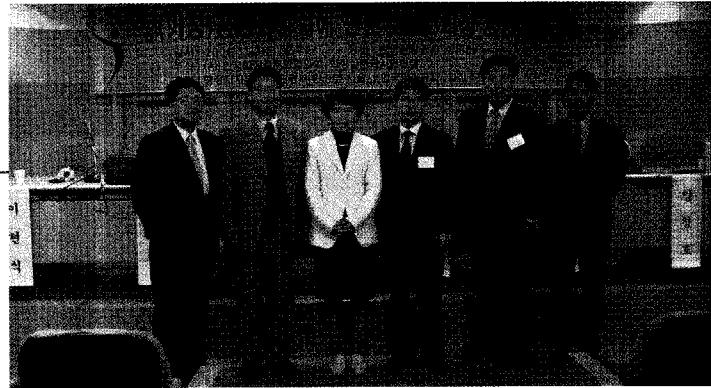
④ 기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시설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6조, 제7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(상·하반기)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개선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6조, 제7조,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·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

공청회를 마치고 발표자와 함께 기념촬영▶



제14조(유료화장실 승인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전반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.
② 유료화장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관리 및 평가)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민단체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및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청결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.

제16조(금지행위) 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한다.

1. 공중화장실의 건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
2. 공중화장실의 이용 중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
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여 사용수수료를 징수하는

행위
②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광고물 및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
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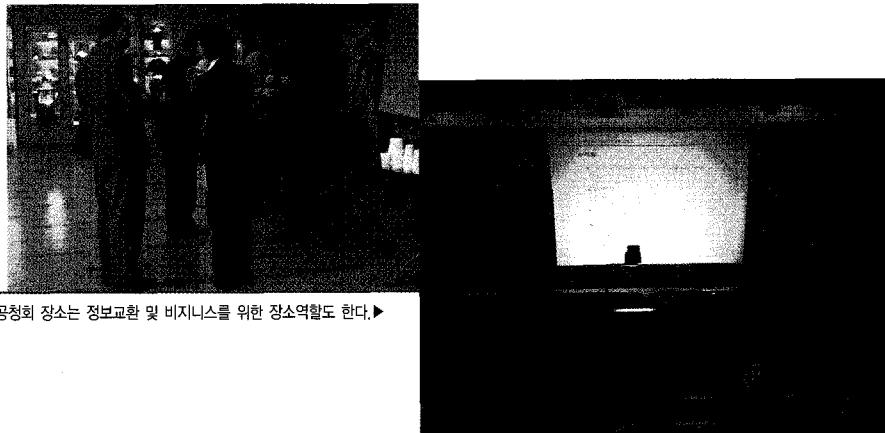
제17조(위원회의 설치와 위탁관리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공중화장실의 설치·유지·관리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시·군·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·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설치비용의 보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관광지, 자연공원, 재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나



공청회 장소는 정보교환 및 비지니스를 위한 장소역할도 한다.▶

관광객 및 다수인이 왕래가 잦은 장소의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조례에의 위임)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보고 등)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군·구청장에게 공중화장실 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벌칙)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
제2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
3.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(참조 토양법에서는

대령으로 함)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■ 부칙

제1조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폐지한다